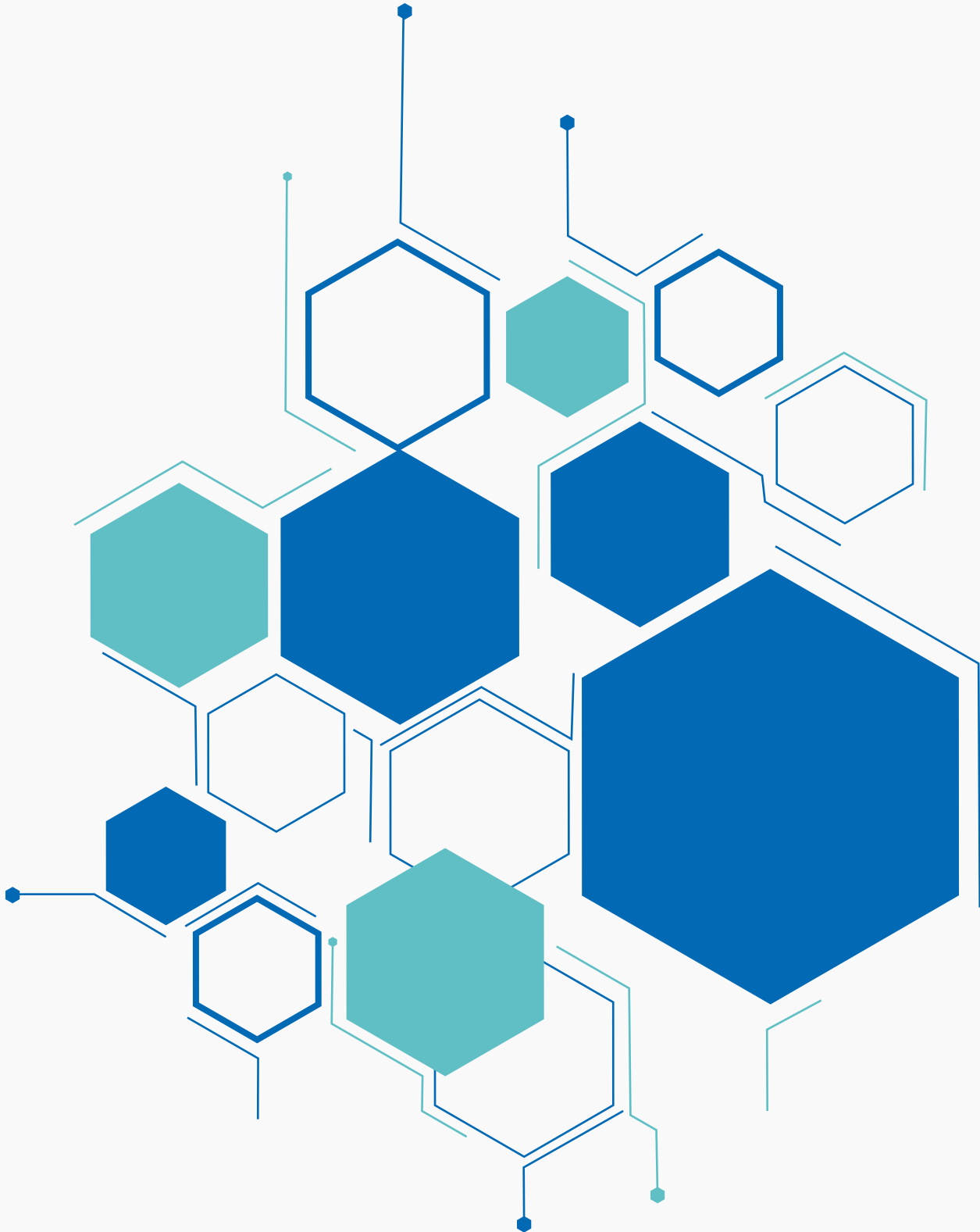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

학습자용 학습자료

과목별핵심학습자료



훈련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
학습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p>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훈련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
학습자료	<p>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p>
	<p>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지 않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고 •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일정한 금액을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훈련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
학습자료	산재보험의 적용
	<p>산재보험의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벌목업을 제외한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훈련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
학습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행
	<p>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행</p> <p>산업재해보상보험의 관장과 수행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산재보험 사업의 수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 등의 요양 및 재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p>

훈련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
학습자료	<p>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및 수급권자</p>
	<p>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및 수급권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가입 사업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됩니다. • 임의가입 사업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이고,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의제가입 사업자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 당연 가입되거나 임의 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 산재보험의 수급권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의 수급권자가 되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훈련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
학습자료	<p>업무상 재해</p>
	<p>업무상 재해</p> <p>업무상 재해의 업무 관련성은 업무 수행성과 기인성의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수행성 _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휴식시간과 같이 사업주가 지휘·감독할 여지가 있는 범위 내의 시간 및 업무상 출장도 업무 수행에 포함됩니다. • 업무 기인성 _ 업무와 재해로 인한 상병 등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재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재해발생의 원인이 된 상황 아래서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인정이 됩니다. •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과의 관계 _ 일반적인 업무 수행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사적 행위 또는 자해행위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 기인성이 부인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훈련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

학습자료

업무상 재해의 종류

업무상 재해의 종류

- 업무상 사고 _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이 해당됩니다.
- 업무상 질병 _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과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등이 해당됩니다.
- 출퇴근 재해 _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등이 해당됩니다.

훈련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
학습자료	<p>업무상 재해의 종류</p>
	<p>업무상 재해의 종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상 사고 _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이 해당됩니다. • 업무상 질병 _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과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등이 해당됩니다. • 출퇴근 재해 _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등이 해당됩니다.

훈련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

학습자료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과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등이 해당됩니다.

훈련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
학습자료	<p>업무 수행 중의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p>
	<p>업무 수행 중의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p> <p>업무 수행 중의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행위,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의 경우 업무 수행 중의 사고로 인정되며,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등은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며, 업무의 성질상 업무 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 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p> <p>하지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p>